

등록번호	재무과-9170
등록일자	2016.5.2.
결재일자	2016.5.3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계약팀장	재무과장	경제재정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양지속	박우동	박성주	오남희	조인동	05/03 문석진
협 조	정책기획담당관 규제개혁팀장 주무관	임근래 이창조 김오녀			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업비
	기관·부서·단체명	협약내용	협약결과	
	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가족과	규제심사/위원회 협의 법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	2016. 4. 4./4.5.원안동의 2016.4.28. 심사완료 2016. 4. 4. 원안동의 2015. 4. 1. 원안동의	해당없음

서 대 문 구
재무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맞추어 관련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 및 일부 용어를 개정·보완하고자 함.

1 관련 근거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(시행 2014. 11. 19. 법률 제12844호)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시행 2016. 2. 11. 대통령령 제26975호)

2 개정 이유

-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
-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 자문 기능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신설
-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및 제척·기피에 관한 규정을 변경·신설하고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
- 주민참여 감독관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감독수당을 인상하여 수당을 현실화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 반영
 -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위촉 위원 임기를 2년으로 개정(안 제2조제2항 및 제4항)
 - 위원의 해임, 해촉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변경(안 제11조)
-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및 기능 정비
 - 위원회 위원 성별 구성 방법을 상위법령에 따름(안 제2조제3항)
 - 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삭제 하고, 위원회 심의대상 사항 중 계약의 규모와 상관없이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명백히 구분토록 조항 신설(안 제4조)
 -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“자문” 에 관한 사항 용어정리 및 삭제(안 제5조 ~ 안 제9조)
- 주민참여감독관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
 -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를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변경(안 제12조)
 -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“20,000원” 에서 “30,000원” 으로 상향조정(안 별표)
- 그 밖에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사항 보완
 - 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관련한 용어 정리 및 중복내용 삭제(안 제6조)
 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1조의2 신설)

4

향후 추진일정

- 입법예고 : 2016. 5. 4 ~ 2016. 5. 24 (20일 이상)
- 조례·규칙심의회 상정 : 2016. 5월중
- 구의회 개정 조례안 상정 : 2016. 6월중
- 조례 공포·시행 : 2016. 7월중

- 붙임 1. 개정 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안 1부. 끝.